



제2022-043556-01-1호

# 안전인증서

씨큐리티(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, 1208~1211호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방폭 IR Fisheye 카메라

형식·모델(용량·등급) / 인증번호

DC-SP6C11EXY(Ex ID A21 T80 °C) / 22-KA2BO-0631X

인증기준

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22호

인증조건

## 1. 제조공장

·본 인증서는 '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, 1208~1211호'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.

## 2. 제품개요

·제품개요: 당 제품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외함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광부로 구성된 분진방폭구조의 감시카메라임.

·제품정격: 48 V<sub>dc</sub> (POE), 10.6 W 이하

·사용주위온도: -40 °C ≤ T<sub>a</sub> ≤ +55 °C

## 3. 인증범위: 본 인증서는 위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.

## 4.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

·기기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. (투광부 2 J, 그 외 4 J 이하)

·정전기 브러시 방전의 위험을 최소화 하여 사용할 것.

## 5. 인증(변경)사항: 없음.

## 6. 그 밖의 사항

·사용자 매뉴얼 참조

·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, 확인심사 수검,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.

2022 년 10 월 14 일

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

